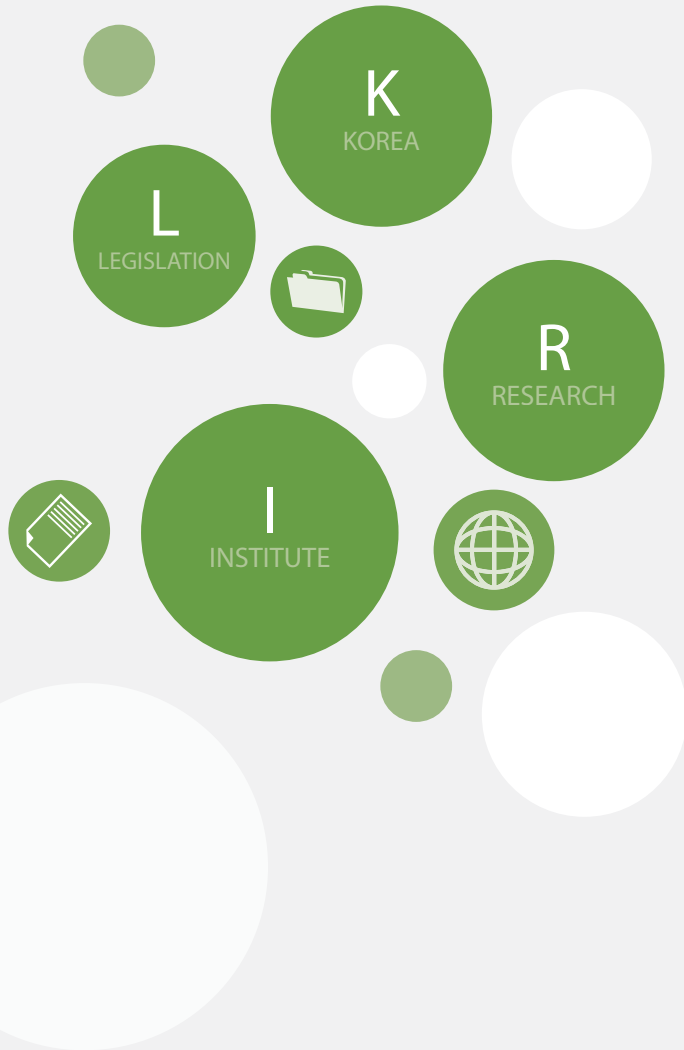


프랑스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전학선



프랑스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자: 전 학 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ONTENTS

Issue Paper

I. 서론 04

II. 프랑스의 사법체계 05

1. 사법체계의 이원적 구조 05

2. 법원 06

III. 노동법원의 역사와 지위 10

1. 노동법원(Conseil de prud'hommes)의 역사 10

2. 노동법원의 지위 10

IV. 노동법원의 조직과 구성 11

1. 노동법원의 조직 11

2. 법관 11

3. 법관의 지위 12

V. 노동법원의 권한 13

VI. 2014년 1월 정부의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 14

1. 제안이유 14

2. 노동법원 법관 선출방식 16

3. 낮은 투표율과 고비용 선거 17

4.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19

5. 임명 방식 개선의 영향 20

참고문헌 22



I. 서론



-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일반적으로 노동법원이라 하는데,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노동법원(Conseil prud'hommes)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음
-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노동법원은 대법원 산하의 특별법원이라 할 수 있음
- 노동법원의 법관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대표인 법관은 사용자의 선거로 선출되고, 근로자 대표인 법관은 근로자들의 선거로 선출됨
- 그러나 최근에 노동법원 법관 선출을 위한 선거가 투표율이 낮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음
-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노동법원 법관 임명 방식을 변경하고자 2014년 1월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음
- 동 법률안에 따라 프랑스 특유의 제도라 할 수 있는 노동법원의 제도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노동법원 법관선출을 선거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2014년 1월 22일 프랑스 정부가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에 제출한 법률안을 토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프랑스에서 노동법원 법관 임명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함

II. 프랑스의 사법체계



1. 사법체계의 이원적 구조

- 프랑스에서 헌법상 사법권한은 사법법원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보면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프랑스의 사법권은 일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법원(Juridiction judiciaire)과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Juridiction administrative)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외에도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재판소(La Haute Cour)와 정부구성원의 책임에 대하여 심판하는 공화국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등이 있음
-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의 이원적 구조는 그 연원을 역사적 사실에서 찾을 수 있는데,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야기된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립 및 사법법원에 대한 불신에 기초해 있음
-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인사들은 구체제하에서 재판기관인 Parlement에 대하여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Parlement은 재판기관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칙령등재권을 통하여 입법권에 관여하며, 이것을 통하여 왕에 대해 상소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왕의 행정에 개입하며, 그 구성원은 왕권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의 주지사에 임명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Parlement의 활동은 바로 귀족계급이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략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곧 혁명가들에게 새로운 사법제도를 위한 여명으로 이어졌음¹⁾

1)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689면.

- 따라서 1790년 8월 16-24일 법률은 행정권한과 사법권한의 분립원칙을 도입하게 되었고, 1790년 11월 27일 및 12월 1일 법률은 행정재판과 사법재판의 분립을 규정하게 되었는데, 특히 혁명력 8년 frimaire 22일 헌법에서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Etat)를 창설하고 동 pluviöse 28일 법률에서 현 지방법원의 전신인 Conseil de Préfecture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음
- Conseil de Préfecture가 진정한 사법기관이라면 행정최고재판소는 사법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입법·행정작용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력력에 대하여 자문하고 국가원수가 쟁송사안에 관해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행정최고재판소도 국가원수가 조정할 사안에 관하여 이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806년에는 행정최고재판소에 소송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보재판(justice retenue)의 이름으로 행하여졌음
- 이러한 유보재판으로 1872년 5월 24일 법률에서 위임재판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로써 행정최고재판소는 국가원수의 서명을 받기 위한 해결방안을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프랑스의 재판은 1790년에 창설된 대법원(Cour de cassation)과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Etat)라는 두 개의 최고법원을 중심으로 분명한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음²⁾
-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최고재판소는 지금도 그 장이 수상으로 되어 있어 행정부 소속이므로 사법부라 할 수 없음³⁾

2. 법원

▶ 행정법원

- 프랑스에서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최고재판소를 최고법원으로 하는 행정법원으로, 행정법원은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행정법원(le tribunal administratif)과 고등법원에 해

2) ibid.

3) 프랑스 법원 구조에 대해서는 전학선,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의 다양성과 지위,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3호, 2009, 12, 391면 이하 참조.

당하는 항소행정법원(la Cour administrative d'appel) 그리고 최고법원인 행정최고재판소로 되어 있음

- 프랑스에서 행정최고재판소는 기능적으로는 재판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지만 구성상의 성격은 행정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행정최고재판소의 장이 수상(Premier ministre)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 수상을 소장으로 하는 행정최고재판소는 사법부와 구별되어 전통적인 권력분립이론과는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는 독특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나, 수상은 행정최고재판소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명목상의 장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장은 부소장이라 할 수 있음
- 행정최고재판소는 2014년 11월 현재 7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송을 담당하는 소송국(La section du contentieux)과 보고와 조사를 담당하는 보고조사국(la section du rapport et des études)이 있다. 그 외에 자문 기능을 하는 국이 다섯 개가 있는데, 내무국(la section de l'intérieur)과 재정국(la section des finances), 공공건설국(la section des travaux publics), 사회국(la section sociale), 행정국(la section de l'administration)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프랑스 행정최고재판소의 성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소송국의 구성원이 행정법원의 판사에 해당하는가를 생각하면 행정최고재판소의 소속을 보면 일반 공무원이라 할 수도 있으나, 그 지위를 고려하여 볼 때, 지위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통하여 공정한 업무의 수행을 요청받고 있는 점이라든가 행정법원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제L231-3조에서 '법관의 업무(leurs fonctions de magistrats)'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관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도 될 것임
- 행정최고재판소는 통상 중요한 법령안에 대하여는 자문을 하는데, 행정최고재판소에 의한 법령안의 자문은 의무적인 경우와 임의적인 경우가 있음
- 법률안, 오르도낭스(Ordonnance)안, 1958년 헌법이전에 법률에 규정되었지만 1958년 헌법에 의해 명령사항이 된 규정을 개정하는 명령안 등은 행정최고재판소의 자문을 받아야 함

- 법령상 명문의 규정에 의해 행정최고재판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데크레(décret)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안 작성시에 다음과 같은 데크레는 행정최고재판소의 자문을 받는 명령으로 제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함 : ① 실체규정을 규정하는 데크레, ② 법률규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데크레, ③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규정하는 데크레, ④ 사람의 기본권과 관계있는 데크레, ⑤ 사회권 및 노동권과 관계있는 데크레, ⑥ 재산제도, 물권 및 시민의 민사상 또는 상업상의 의무와 관계있는 데크레, ⑦ 공공단체의 조직과 운영, 공공 시설법인의 창설, 그들의 구성규칙의 변경에 관한 데크레
- 행정최고재판소의 자문을 받은 후 제정된 데크레의 개정도 행정최고재판소의 자문이 의무적인 경우에는 행정최고재판소에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최고재판소에의 자문이 의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최고재판소의 자문을 받음이 없이 단순한 데크레로도 가능함
- 프랑스 행정법원은 행정재판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정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에 자문도 수행하는데, 지방행정법원과 항소행정법원은 자문기능이 약하지만 행정최고재판소는 자문기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음
- 행정재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항소행정법원(la Cour administrative d'appel)은 1987년 12월 31일 행정소송개혁에 관한 법률(Loi n°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에 의하여 창설되었음
- 따라서 항소행정법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프랑스에서 행정소송은 2심제였음
- 2014년 12월 현재 프랑스에는 8개의 항소행정법원이 있음⁴⁾

4) 8개의 항소행정법원은 Bordeaux, Douai, Lyon, Marseille, Nancy, Nantes, Paris, Versailles에 있고 관할은 다음과 같다(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Article R221-7).

- Bordeaux : ressort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de Bordeaux, Limoges, Pau, Poitiers, Toulouse, Basse-Terre, Cayenne, Fort-de-France, Saint-Denis, Mayotte, Saint-Barthélemy, Saint-Martin et Saint-Pierre-et-Miquelon
- Douai : ressort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d'Amiens, Lille et Rouen
- Lyon : ressort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de Clermont-Ferrand, Dijon, Grenoble et Lyon
- Marseille : ressort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de Bastia, Marseille, Montpellier, Nice, Nîmes et Toulon
- Nancy : ressort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de Besançon, Châlons-en-Champagne, Nancy et Strasbourg

- 우리나라의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행정법원(le tribunal administratif)이 있는데, 2014년 12월 현재 40여 곳 이상에 설치되어 있음

➤ 사법법원

- 프랑스에서 행정소송을 제외한 일반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법원임
- 프랑스에서 사법법원은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그 독립성이 보장되고,⁵⁾ 사법권의 독립성은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의하여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인정받고 있음⁶⁾
- 행정소송을 제외한 일반재판도 3심제가 원칙이라 다양한 1심법원과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항소법원(Cour d'appel), 그리고 최고법원인 대법원(Cour de cassation)이 있음
- 2심법원인 항소법원에는 민사부, 사회부, 상사부, 형사부 등을 두고 있는데, 36곳 정도에 항소법원을 두고 있음
- 1심법원은 다양한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사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소법원(Tribunal d'instance),이 있고, 형사법원에 해당하는 중죄법원(Cour d'assises), 경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 등이 있으며, 민형사 사건을 모두 다루는 근린법원(Juge de proximité)이 있음
- 이 외에도 1심법원으로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 사회보장법원(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 노동법원(Conseil de prud'hommes) 등이 있음

• Nantes : ressort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de Caen, Nantes, Orléans et Rennes
 • Paris : ressort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de Melun, Paris, Mata-Utu, Nouvelle-Calédonie et Polynésie française
 • Versailles : ressort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de Cergy-Pontoise, Montreuil et Versailles

5) Michel Lascombe et s, Code constitutionnel et des droits fondamentaux, 2e éd., Dalloz, 2012, p.1131.
 6) CC. n°98-396 DC du 18 février 1998.

III. 노동법원의 역사와 지위



1. 노동법원(Conseil de prud'hommes)의 역사

- 프랑스 노동법원의 역사는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재판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설치된 것은 1806년임
- 당시 노동분쟁의 해결은 치안법원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리옹의 상인들은 이러한 분쟁해결의 책임을 이해관계 당사자인 자신들로 구성되는 특별한 기구에 위임하여 줄 것을 나폴레옹에게 간청하여 그 승인을 받음으로써 리옹에 최초의 노동법원이 설립되었는데, 리옹에 설치된 노동법원은 오늘날의 노동법원과 대체로 유사한 특징(예컨대, 선출법관, 조정과 심판의 분리 등)을 갖고 있었음⁷⁾

2. 노동법원의 지위

- 노동법원은 대법원 산하의 1심 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노동법원을 거쳐 항소심은 항소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함
- 명칭이 재판소 또는 법원에 해당하는 Tribunal이 아니라 Conseil이긴 하나 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법률에서는 노동법전(Code de travail) 제IV편(Livre IV)에서 제L1411-1조부터 제L1471-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7) 조용만, 프랑스의 노동법원제도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8권, 2003, 117면.

IV. 노동법원의 조직과 구성



1. 노동법원의 조직

- 노동법원의 법관은 직업법관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임
- 노동법원은 4명의 직업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되는데, 2명은 사용자에 의하여 선출된 법관이고 2명은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된 법관임
- 노동법원은 5개의 국(section)으로 구성되는데, 농업국(l'agriculture), 공업국(l'industrie), 상업국(le commerce), 관리감독직근로자국(l'encadrement), 기타직종국(les activités diverses)이 있음
- 각 국에는 매년 선거로 선출하는 국장과 부국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번갈아가며 맡게 되어 있음

2. 법 관

- 노동법원의 법관은 국가선거로 선출하는데, 임기 5년으로 연임이 가능함
- 유권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의 법관을 선출하는데, 후보자는 프랑스 국민이어야 하고 21세 이상이어야 함
- 선거법전(Code électoral) 제6조에 규정된 선거인 자격을 박탈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 근로자는 노동법원 법관 선출에 있어서 유권자이자 후보자가 될 수 있음

3. 법관의 지위

- 국가는 노동법원 법관 연수교육을 조직하고 비용을 부담함(노동법전 제L1442-1조)
-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노동법원 법관으로 선발된 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법관 임기 동안 6주를 허가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무를 면제해 줌(노동법전 제L1442-2조)
-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자의 근로자인 노동법원 법관에게 법관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여야 함(노동법전 제L1442-5조)
- 노동법원 법관으로 일하는 것은 무보수임
- 근로자가 노동법원 법관으로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법원 법관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파기하거나 징계를 할 수 없고, 노동법원 법관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노동법전 제L1442-19조)

V. 노동법원의 권한



- 노동법원은 임금과 유급 휴가, 상여금, 해고나 파면 등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임
- 노동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임금이나 휴가,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 중에서의 근로계약의 집행에 관한 분쟁 또는 해고나 파면, 보상 등과 관련된 계약의 파기 중 근로계약의 집행에 관한 분쟁을 담당함
- 노동법원은 단지 개인적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고 집단적 분쟁인 민사법원 등의 관할에 속함
- 일반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관할에 적어도 하나의 노동법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지방법원 관할에 여러 개의 노동법원을 설치할 수도 있음(노동법전 제L1422-1조)
- 노동법원의 설치 및 폐지와 관할 등은 행정최고재판소 심의를 거치는 데크레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노동법전 제L1422-3조)

VI. 2014년 1월 정부의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



1. 제안이유

- 프랑스 정부는 2014년 1월 22일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회(l'assemblée nationale)에 제출하였음
- 제안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노동법원은 사법법원의 한 종류이며, 근로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필수적인 법원이라 할 수 있음
- 노동법원은 프랑스의 고유한 구조로 그 특별성과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프랑스의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임
- 오늘 날 노동법원의 법관 선출 방식인 선거제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로서 공권력에 의한 임명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 노동법원 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미래에 매우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처지에 있음
- 2008년 8월 20일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개혁과 근로시간 개혁에 관한 법률(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⁸⁾은 오늘날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지지 결과에 근거하여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고용주의 대표성에 있어서 고려되는 개혁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사용자 집단의 관련될 수 있을 것임

8) 동 법률은 잡칙과 임시조항을 제외하고는 노동법전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 노동법원의 법관의 임기는 2008년 8월 20일 법률에서 시작된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조항을 완성하는 법률(loi n°-1215 du 15 octobre 2010 complétant l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démocratie sociale issues de la loi n°2008-789 du 20 août 2008)에 의하여 연장되었는데, 늦어도 2015년 12월 31일에는 새로 선출하여야 함
- 오르도낭스(Ordonnance)에 의하여 새로운 임명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노동법원의 법관 임명에 있어서 개혁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률안은 10개 사항에 관하여 오르도낭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임
- 10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노동법원 법관 임명 방식
 2. 국(section)과 단체(collège), 노동법원에서 조직에 의한 의석분배 형태
 3. 후보자의 자격과 이에 대한 수리와 통제 형태
 4. 후보자명부 작성 형태
 5. 노동법원 법관 임명 절차
 6. 공석인 경우 대체 형태
 7. 노동법원 법관의 임기
 8. 노동법원의 기능에 있어서 근로자 부재 허가제도
 9. 단체(collège)와 국(section)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필요한 적용
 10. 직업형태와 적용 및 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법률안에 규정된 고용자 대표에 대한 조항이 효력을 발할 때까지 현재의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첫 번째 법관 개선에 있어서 사용자 법관의 임명과 기능을 위한 임기에 관한 임시제도
- 오르도낭스 인준을 위한 수권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달의 1일까지는 의회에 제출되도록 규정하였음
- 미래의 노동법원 법관 임명은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 대표에 의하여 행하여 질 것임
- 제2기 노동조합의 대표 임기와 제1기 사용자 대표 임기 말인 2017년에 차기 개선이 있는데, 차기 노동법원 법관 임명은 2015년과 2017년 사이 2년 동안을 위한 임시 조항에 근거하여 행하여 질 것임

- 상원(Sénat)에서 동 법률안에 관하여 심의 중에 2014년 7월 16일 수정 법률안이 제안되었는데, 수정법률안은 2017년까지의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한 것임

2. 노동법원 법관 선출방식

- 현재 노동법원 법관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되는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됨
- 노동법원 법관 선거에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각각 선출되는데, 유권자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16세 이상의 자로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나 구직자 명단에 올라 있는 자인데, 시민권이 박탈당한자는 유권자가 될 수 없음
-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국과 꼬뮌(commune) 별로 선거인단 명부에 등재됨(노동법전 제L1441-1조)
- 선거권자는 둘 이상의 꼬뮌이나 집단 또는 국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될 수 없는데,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주로 활동하는 집단에 선거권자로 등재됨(노동법전 제L1441-2조)
-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선거권자는 노동법전 제L1441-6조에 명시되지 않는 근로자와 노동법전 제L1441-4조에 규정된 권한에 대하여 개별 위임을 받지 않은 간부, 견습계약 근로자, 노동법전 제L1441-1조에 규정된 구직자임(노동법전 제L1441-3조)
- 사용자 대표 선거의 유권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와 집단 명의를 단체, 이사회(conseils d'administration)의 장, 부사장과 국장, 사용자와 유사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 등임(노동법전 제L1441-4조)
- 선거는 명부식 비례대표선거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노동법원 법관 선거 전체를 하루에 치름
- 선거는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며 시청이나 근무지 인근 장소에서 투표소가 정해 짐(노동법전 제L1441-32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하여 결근하는 것을 허가하는데, 이 때 결근으로 인한 임금의 감소는 허용되지 않음(노동법전 제L1441-34조)

3. 낮은 투표율과 고비용 선거

- 노동법원 법관 선출을 위한 선거는 계속되는 선거방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동법원 법관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이 1979년에는 62.07%였으나 2008년에는 25.63%까지 떨어졌음

[표] 연도별 노동법원 법관 선거 투표율

년도	1979	1982	1987	1992	1997	2002	2008
참여율	62.07	57.80%	45.12%	39.57%	33.61%	32.35%	25.63%

[표] 노동법원 법관 선거 투표율

집단	항목	1992년	1997년	2002년	2008년
근로자 집단	유권자	14,067,211	14,805,961	16,603,187	18,638,971
	투표자	5,666,958	5,094,378	5,414,649	4,760,754
	투표율	40.28%	34.41%	32.61%	25.48%
	기권율	59.72%	65.59%	67.39%	74.52%
사용자 집단	유권자	719,775	928,042	763,437	518,688
	투표자	184,398	193,818	202,981	161,646
	투표율	25.62%	20.88%	26.59%	31.16%
	기권율	74.38%	79.12%	73.41%	68.84%
전체	유권자	14,786,986	15,734,003	17,366,624	19,202,659
	투표자	5,851,356	5,288,196	5,617,630	4,922,400
	투표율	39.57%	33.61%	32.35%	25.63%
	기권율	60.43%	66.39%	67.65%	74.37%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노동법원 법관 임명을 선거를 통하여 하는 것은 그 한계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법원 제도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노동법원 법관 선거에 있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가 선거운동 등과 관련하여 많은 개선을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1987년 선거에서는 6200만 유로 이상의 비용이 들었는데, 2008년 선거에서는 8660만 유로 이상의 비용이 들었음

[표] 각종 투표의 비용

선거	투표비용	등록유권자수	등록유권자수당 비용
2008년 노동법원 법관선거	91,596,000€	19,202,659	4.77€
2007년 대통령선거	207,749,086€	43,939,249	4.73€
2005년 유럽헌법 국민투표	119,298,733€	41,789,202	2.85€
2008년 시의회선거	107,999,318€	42,704,017	2.53€
2000년 헌법개정국민투표	27,880,453€	39,941,943	0.70€

- 1979년 이후 노동법원 법관 선거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식적이고 임시적인 목표로 노동법원 법관 선발이 목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묵시적인 것으로 노동법원 법관 선거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차원의 자문이었다는 것임
- 정부는 노동법원 법관 선거에 있어서 노동법원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법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법원 법관 임명을 하고자 하는 것임

- 각 조직들 사이의 의석 배분을 결정하는 의견에 따라 노동법원 법관 임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임명은 의견에 따라 4년 주기로 정해질 것임
-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입법사항임
- 이러한 개혁은 2015년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시행되어야 함

4.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 2009년 노동부 장관은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Etat) 재판관인 Jacky Richard에게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개혁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보고서인 '노동법원 법관 제도의 정당성 강화를 위하여 : 어떤 형태의 노동법원 법관 임용?(pour le renforcement de la légitimité de l'institution prud'homale : quelle forme de désignation des conseillers prud'hommes?)'에서는 몇가지를 제안하였음
- 이에 따르면 노동법원 법관 임명 형태에 관하여 세 가지를 제안한다고 하고 있는데, 첫째는 참여율 증가를 위한 일반적 선거의 유지이고 둘째는 개인적 위임과 소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더 제한적 선거에 기초한 선거의 유지, 셋째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합의 제안에 따른 노동법원 법관임명 절차임
- 첫 번째 제안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제도의 단순화와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개선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 증가를 현실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임
- 두 번째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당선자 개인의 기능의 범위를 벗어나서 특별한 선거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의 법률안은 오르도낭스를 통하여 노동법원 법관 임명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단위의 의견을 듣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5. 임명 방식 개선의 영향

▶ 사회적 영향

- 노동법원 법관의 3분의 2 정도는 재선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정기적으로 나오는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새로운 조항에 의하여 임명되는 노동법원 법관도 동일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됨
- 노동법원 법관 선거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직업 조직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임명절차의 개선은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선거운동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재정적 영향

-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한 노동법원 법관 선거비용은 일반 선거비용보다 적게 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5배 이상 적게 들 것으로 평가됨
- 기업 측면에서는 임명 방식의 개선은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데, 선거의 폐지는 기업의 조직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됨

▶ 환경적 영향

- 노동법원 법관 선거에서 임명제로의 변경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 선거 운동을 위한 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고 투표를 위한 종이의 낭비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종이의 낭비가 줄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행정적 영향

- 더 이상 노동법원 법관 선거를 위한 준비가 필요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선거를 위하여 2014년과 2015년에 많은 준비를 하여야 했으나 선거제도의 폐지로 선거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노동법원 법관 임명 방식의 변화는市長의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법적 영향

- 현재의 법 조항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이 법률안은 유럽법이나 국제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오르도낭스를 통하여 입법조항을 수정하게 될 것임
- 노동법원 법관 선거제도의 개선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법원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며 2015년 노동법원 법관을 새로 선발하는 데 필요한 긴 급성을 충족하고 있음
- 노동법원 법관 임명방식의 개선은 노동법원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 노동법원의 운영이나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고, 2015년 임명에서는 노동법원 제도의 영속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노동법원 법관 임기 중간에 선거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임명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노동법원의 영속성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변화를 꾀하는 것이 될 것임
- 이 법률안은 노동법원의 사법적 기능을 보장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규범에 대한 새로운 조치와 평가가 뒤따를 것임

참고문헌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전학선,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의 다양성과 지위,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3호, 2009. 12.

조용만, 프랑스의 노동법원제도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8권, 2003.

Michel Lascombe et s, Code constitutionnel et des droits fondamentaux, 2e éd., Dalloz, 2012.

Etude d'impact, Projet de loi relatif à la désignation des conseillers prud'hommes, 21 janvier 2014.

Etude d'impact, Lettre rectificative au projet de loi relatif à la désignation des conseillers prud'hommes, 13 juin 2014.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③

프랑스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발행일 2014년 12월 29일

발행인 이원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513-2 93360